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33
----------	------

2025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남궁역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궁역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로 7017의 식물 성장에 따른 화분 균열, 식재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
가 요구되고 있는바, 식물 및 화분에 관리, 화분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서울로 7017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서울로 7017의 관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2) 서울로 7017의 식물 및 화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3) 서울로 7017의 행위의 제한에 화분 훼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6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물·화분 관리, 화분 훼손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서울로 7017 이용·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로 7017’은 노후 고가도로의 구조 보강, 시설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17.5.20 개장)로 운영·관리¹⁾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17.7.13)한 바 있음.
- 현재 ‘서울로 7017’이 준공 후 약 8년이 경과하고 있어 기반시설 보완 등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용’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식물·화분 관리’(안 제5조의2), 화분 훼손 행위의 제한(안 제12조제1항제6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1) ’17.5.20.~’19.10.27. : 직영관리

’19.10.28.~’21.12.31. : 직영관리 + 민간위탁 혼합방식

’22.1.1.~’25.4.23.(현재) : 직영관리(중부공원여가센터-서울로관리사무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란 서울로의 시설물, 식물, 화분 등을 유지·보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리) 시장은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화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화분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정비
3. 계절별 유지관리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분을 훼손하거나, 화분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관리”란 서울로의 시설물, 식물, 화분 등을 유지·보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설〉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리) 시장은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화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화분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정비 3. 계절별 유지관리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신설〉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화분을 훼손하거나, 화분 내에

	<u>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리)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정원도시국)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5조의2	서울시 7017 운영관리	1,631,479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25.1. ~ 2025.12.
- 추진사무 : 서울로 7017 관리업무 전반 및 서울로 보안관 관리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